

#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14:00~16:30 | 장소 • 온라인 줌(Zoom) 토론회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쟁점 토론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중인 「평등법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해당 조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 현재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쟁점토론회에서는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함께,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차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와 영향을 살피면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의 방향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쟁점토론회 •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4:10~14:40	30분	발제 :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영향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4:40~15:40	60분	• 토론 1.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토론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토론 3. 우삼열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 토론 4. 류민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 토론 5.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5:40~15:50	10분	쉬는 시간
15:50~16:20	3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6:20~16:30	10분	마무리

토론 01.

##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영향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토론 01.

##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 (구두발제)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토론 02.

## 종교기관 예외조항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

-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토론 03.

## 종교기관 예외조항과 이주민 차별의 문제

- 우삼열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

# ‘종교기관’ 예외조항의 문제점과 영향

조혜인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서울신문

## [단독] 7년만에 모습드러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종교·전도는 적용 제외

신형철 입력 2020. 12. 10. 18:11 수정 2020. 12. 10. 21:01 댓글 337개

### 종교 전도에는 평등법 적용 제외

다만 종교나 전도에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 4조 4항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종교계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김 의원의 법안이나 정의당 장 의원의 법안에는 없는 부분이다.

1. 기존 법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 추가가 불필요함
2. 조항이 추가되는 경우 종교 관련 차별을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구제를 어렵게 할 가능성
3. 향후 다른 법제에도 종교기관 예외가 인정되는 선례를 남길 위험성

# 문제점(1) : 불필요성

## 1. 기존 법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 추가가 불필요함

- ① 종교적 행사 및 집회, 종교적 행위(예배, 설교, 전도 등)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제3조(차별의 개념)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1. 고용
2.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4.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 기존 법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 추가가 불필요함

- ② 종교의 자율성은 종교기관 예외 조항 없이 일반적인 ‘차별의 예외’ 조항으로 충분히 보장됨

###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종교교육을 담당할 교수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자격 및 채용대상을 해당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고용 상의 차별이 아니라 차별의 예외에 해당
- 직무와 무관하게 특정 종교나 신념을 가질 것을 채용 조건으로 하거나, 직장 내에서 종교 및 개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차별에 해당.

# 문제점(1) : 불필요성

차별의예외	평등법시안(제4조)	차별금지법안(제3조 2항)
진정(직업) 자격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1.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과도한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극적 우대조치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문제점(1) : 불필요성

국가인권위원회 2007.10.22자 05진차494 결정 [교수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피진정인 ○○대학교는 교수 응시자격 및 지원서 상에 명시적으로 비기독교인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지원서 기재 항목에 ‘세례유무’와 ‘세례연도’, ‘교회’란을 적도록 하고 있고, ‘전공분야의 기독교적인 교육과 연구’라는 항목을 두고 이를 기독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자의 계획을 묻고 있고, 나아가 ‘신앙간증’, 신앙고백’ 등을 기재하여 신앙의 척도를 채용항목 점수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때, 피진정인이 실질적으로 지원자를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이 인정된다.

2007. 4. 19. 기준으로 교원 178명 중 천주교인 1인을 제외하고는 177명이 개신교도 인인 점에 비추어 교수 채용 시에 기독교인인지 여부에 의해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문제점(1) : 불필요성

이러한 ○○대학교의 교수채용 관행이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안의 것으로 허용되는 행위인지 혹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대학교의 설립목적, 교과목 등의 종교 관련성 정도를 고려할 때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것’이 ○○대학교 교수의 직업을 위한 필수적 자격요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학교는 그 정관에서 설립목적을 ‘기독교 지도자 양성’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70.1%로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 ○○대학교의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볼 때, ... ‘언론정보문화학부’를 제외한 11개 학부는 기독교 교리와 쉽게 연관되지 않는 일반 교과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학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개별 학부, 학과 혹은 교과과정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교수직 채용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기독교인인지 여부를 실질적인 채용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기 어려우며, ○○대학교의 모든 학부 교수에 대하여 기독교인인지 여부가 필수적인 직업자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문제점(2) : 기존 차별의 심화

## 2. 조항이 추가되는 경우 종교 관련 차별을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구제를 어렵게 할 가능성

〈종교기관 예외조항이 추가되는 경우 평등법안〉

제4조(차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 문제점(2) : 기존 차별의 심화

- “종교단체에 소속된 기관” : 종교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종립 의료원 및 요양원, 종립학교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될 가능성
- 종교단체들에 의해 설립·운영된다 할지라도 의료, 교육, 사회복지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기관이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구분	합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종교별 법인 현황	1,181	353	633	118	77
종립학교 (고등교육)	145	10	109	15	11
종립학교 (초중등 및 대안학교)	851	30	631	81	109
요양·의료기관	399	72	102	186	39
호스피스 기관 및 단체	161	23	94	38	6
사회복지법인과 주요단체	529	152	259	97	21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 문제점(2) : 기존 차별의 심화

## (1)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 강요 사례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및 이용대상자들이 해당 종교의 신자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내에서 반복적인 종교 강요 실태가 지속적으로 보고됨

- ✓ 2020년 11월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실태조사 : "종교행위와 후원을 강요받았다" 61.1% (전체 응답자수 전국 사회복지사 230명)
- ✓ 2019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 "원하지 않는 종교 행위 강요로 인한 괴롭힘을 경험하였다" 19.6% (전체 응답자수 1,140명 )
- ✓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매일 아침 예배 시간을 운영하면서 순서를 정해 2개팀씩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매월 예배 출석확인을 게시판에 공지하며 예배 참석횟수를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서울시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음(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19신청-51, 19신청-57(병합))
- ✓ 채용 시 지원서에 종교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월급에서 십일조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례 등 (「한겨레21」, 2019년 1월 21일자)

## (2) 그밖의 고용상 종교차별 사례

- ✓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에게 대표가 운영하는 교회에 나올 것, 월요일예배, 주말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국가인권위 2017. 1. 25.자 16진정0999900 결정)
- ✓ 채용포털사이트 공고 중 보험 및 연금 상품 판매를 위해 기업체 섭외를 담당하는 텔레마케터, 임원의전 및 경호업무, 사립 대학교 입학사정관, 대안학교 국어 및 수학교사 등 종교와 무관한 직무에서 채용조건으로 신앙인일 것을 명시한 사례들(2015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
- ✓ 2016년 공공기관 및 민간상장기업의 입사지원서 3,567개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금지사유(19개 예시)를 기준으로 평균 4개의 차별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종교 관련 정보를 기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8.5%(303개) 조사됨.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고용영역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실태 모니터링』)

## 문제점(2) : 기존 차별의 심화

### (3) 종립학교에서 교원, 교직원에 대한 고용차별 사례

- ✓ 종립 중고등학교 교사 98명 중 “채용 당시 특정 종교 교인/활동에 관한 조건이 있었다” 28.6%, “일과 시간 외에 종교활동 참여를 요구받았다” 16.3%, 신입교사 채용조건, 교장, 교감의 자격요건으로 세례교인이 될 것을 요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 종립대학교 교수, 교직원 채용공고 시에 지원자격을 기독교 신자나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복적인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9. 3. 20.자 18진정0819200 18진정0831900(병합), 2018. 12. 28.자 18진정0830800, 2018. 12. 12.자 18진정0034900, 2018. 12. 12.자 17진정1119700, 2018. 11. 12.자 17진정0983000, 2015. 4. 28.자 15진정0068000 결정 등)
- ✓ 종립대학교 교수의 가족들이 다른 종파의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해당 교수가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2020. 1. 22.자 19진정0383000 결정).
- ✓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보는 행정 직원 지원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출석 교회 당회장 추천서를 제출하게 한 사례 (「연합뉴스」, 2019년 4월 5일자)

## (4) 종립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종교차별 사례

: 종립학교라 하더라도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 2012년 기준 종립학교 중 58.1%가 종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이러한 종립학교의 학생들 중 “종교교과 수강 선택의 자유가 없다” 61.1%(280명), “대체교과 선택의 자유가 없다” 20.1%(41명), “종교활동을 기준으로 학생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1.8%(13명) (2012년 국가인권위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4) 종립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종교차별 사례

- ✓ 신입생 등록 시에 <‘예배’ 및 학교행사 참여 동의>라는 안내문을 배포하여 회신을 요구하고 등록이 된 이후에는 예배 불참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나아가 대체교과 없이 종교학 과목을 듣도록 한 사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2017-11).
- ✓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가합창제를 개최하고 학생들에게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사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2017-15).
- ✓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신학대 생활관 입사서약서에 있는 새벽채플 참석을 강제하고 5회 불참 시 퇴사 조치(국가인권위 2019. 4. 10.자 19진정0076000 결정), 종립대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페미니즘 강연회라는 이유로 불허를 통보하고 관계자 학생들에 대해 징계(국가인권위 2018. 11. 12.자 18진정0052400. 18진정0065100. 18진정0074000 (병합)), 학내 총여학생회와 성소수자 모임이 인권영화제 개최를 위해 강의실 대관신청을 했으나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이 대학의 설립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허가를 취소(국가인권위 2018. 11. 12.자 15진정0917300·16진정0398000(병합))

## 소결

- 현재 한국사회에서 종교단체에 소속된 법인, 종립학교, 종립 요양·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의 규모가 상당함. 또한 종립학교의 수가 많고, 종립학교에 다니게 되는 대다수의 학생이 배정에 의해 가게 되거나 배정이 아니더라도 입시서열 등의 문제로 선택지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사회적 특성이 있음.
- 현재 많은 종교기관 및 법인에서 국가인권위가 불합리한 차별(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행위까지도 차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적인 목적의 활동을 주로 하는 민간기업에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과 종교 강요 등 괴롭힘이 적절하게 규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처럼 종교단체 관련 기관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기관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이미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당한 차별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농후함. 누구나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려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훼손시킬 위험성.

## 3. 향후 다른 법제에도 종교기관 예외가 인정되는 선례가 될 위험성

- 한국에서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안에서 종교기관임을 이유로 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최초의 입법례. 다른 인권 관련 법제에서도 종교기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실제로 2019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와 관련하여 ‘종교단체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법인 등 시설은 성평등위원회 설치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라는 개정 압박 사례 있었음
- 종교를 내세운 차별금지법/인권 관련 법조례 반대 운동이 계속 되어왔던 상황에서, 종교기관이 차별의 예외로 명시되는 경우, 마치 종교기관은 차별금지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

## 외국에도 종교 관련 예외 조항을 둔 차별금지법 법제들이 존재하나 한국과 분명한 차이점 존재함

### ① 종교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맥락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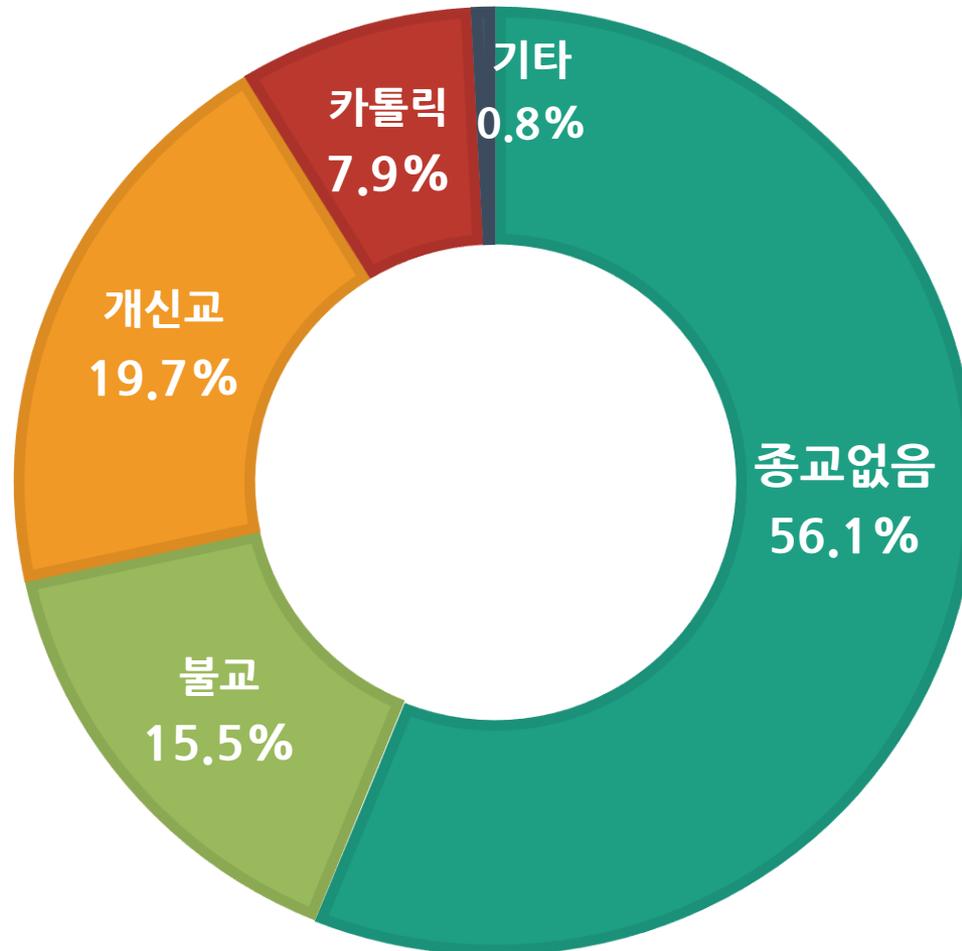
- 종교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역사적으로 특정 종교를 ‘국교’로 인정해온 전통, 종교개혁 이후 유럽 종교전쟁 등을 거치며 ‘종교의 자유’가 해당 국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긴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 독일의 경우 루터교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은 바이마르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독일기본법)에 따라 매우 특권적인 지위가 부여. 사법(私法) 단체가 아닌 공법(公法) 단체로서 국가 산하가 아닌 정부와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고 세금도 징수하는 등 매우 특수한 권한과 지위를 헌법상 보장받음.
  - 영국 또한 성공회라는 특정 종교가 국교로서 절대적 가치를 지녀왔던 국가. 영국 성공회는 법적으로 오랜 기간 특권을 인정받아왔으며 현재도 잉글랜드 성공회 주교는 국왕에 의해 임명되며 모두 상의의원을 겸직하게 되는 등 다양한 법적, 사회적 특권을 인정받고 있음.

## ① 종교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맥락의 차이

- 외국의 종교에 관한 예외 조항들은 종교기관들이 이미 법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종교가 특권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세속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 것인가를 사회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며 한국사회와는 그 역사적 맥락, 사회적 배경, 법적 상황이 전혀 다름
- 한국과 같이 무종교인이 과반수가 넘고 지배적인 종교가 없는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기관을 다른 일반 기관 및 시민과 다르게 특별 취급하면서 별도의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은 법적·사회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없음. 외국의 경우에도 캐나다와 같이 종교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국가에서는 인권법에 종교 예외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종교

■ 종교없음 ■ 불교 ■ 개신교 ■ 카톨릭 ■ 기타



## ② 외국 입법례는 차별금지사유 및 영역별로 매우 세부적인 개별적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외국의 차별금지법제는 종교 관련 예외 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일반적 예외 조항과 더불어 차별금지사유 및 영역별로 여러 개의 개별적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형태이며. 종교에 관한 예외 조항은 다양한 개별적인 예외 조항 중 하나에 해당.
- 반면, 현재 보도된 종교기관 예외조항은 법안에 일반적 예외 조항이 아닌 개별적 예외 조항로 종교기관에 관한 조항 하나만이 존재하는 상황. 이는 법체계상 매우 기이하며 그 근거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형식으로서, 동등하게 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회구성원들 중에서 종교기관만을 분리시켜 특권적 지위에 올려놓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

- 서구는 신정일치 사회에서 다원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진통을 겪어왔으며 종교 예외 조항은 그런 역사적 맥락을 반영. 이런 측면에서 비교해볼 때 한국은 이미 균형잡힌 다원민주주의 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음. 2014년 세계 각국의 종교 다양성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싱가포르, 대만 등과 함께 가장 종교 다양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Pew Research Center(2014)). 한국과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는 종교와 종교, 종교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한국은 또한 건국 초기부터 「헌법」에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은 “어떠한 의미의 국교도 거부하며,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의 편파성도 금지하며, 정치와 종교간의 제도적 분리를 내포”함
-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특징과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하나의 종교가 자신들의 교리를 들어 다른 종교 신도나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이른바 ‘종교차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러한 차별을 실제적으로 규율하면서 ‘모두를 위한 평등’의 정신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함.

---

# 종교기관 예외조항과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차별 -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

---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5. <제1회 송실대학교 인권영화제>대관취소**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내 행사 및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2018. 국가인권위 시정권고(15진정0917300 등)**  
“대상 대학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학이념의 구현은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며, 지속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한 이해와 설득, 끊임없는 학문의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요 또는 강제 및 제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2019.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게시 불허됨**

**2020. 국가인권위 시정권고(19진정020400)**

**2020. 대학 측 인권위 권고 불수용**

# 사례 #2



**2018. 5. 17.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학부생  
8인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 참석**

**2018. 5. 23.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칙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동성애에 관한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징계

**2018. 7. 27. 신학대학원생들에 대한 징계처분**

**2019. 5. 17. 서울동부지법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2019. 7. 18. 서울동부지법 징계무효확인 판결**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징계대상 사실  
또는 그 사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그에 관한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2020. 5. 14.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 호남신대 학칙

제9조 (입학자격)

① 모든 입학지원자는 본 교단이 규정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아니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

## ■ 총신대 학생지도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지도 또는 징계할 수 있다.

4.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음주, 흡연, 동성애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를 한 학생

## ■ 장신대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47조 (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동성애에 관한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

2018년부터 다음 내용을 포함한 입학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음

“ 4. 본인은 입학 후 기본적인 도덕성의 문제, 예컨대 폭행, 절도, 시험부정행위, 과제물 및 논문표절 등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 교단의 건덕 상의 문제인 음주, 흡연까지도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동성애에 관하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결의에 반하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입학이 취소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 종립학교와 성소수자 차별

- 종립학교로 이야기되는 학교들은 모두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
-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준수할 의무
- 신학자 양성만이 아닌 다양한 학과를 지닌 종합대학으로서의 성격
- 공공기관이기에 투여되는 공적지원금(2016년 사립대학이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은 총 5조 5,147억원으로 수입총액의 22.6%)

구분 사도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그밖의 종교	계
일반대학	5	61	14	2	4	86
대학원대학교(=전문대학원)	3	23		1	1	28
전문대학(종교계)	-	23	1	1	1	26
원격대학교	2			1		3
각종학교	-	2	-			2
계	10	109	15	5	6	145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제4조(차별의 예외) 4.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 적용되는 주체들이 지나치게 넓음. 종교 단체 소속 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종교를 이유로 한 광범위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을 허용할 수 있는 문제

※ 외국의 법제들은 설령 종교예외조항을 두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다른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거나 해석함.

예) 호주 타즈매니아주의 차별금지법 : 종교적 믿음 또는 신도 자격을 이유로 입학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으나, 이는 입학에만 한정되며, 또한 이것이 다른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됨

미국 *Starkey v. Roman Catholic Archdiocese of Indianapolis*, No. 1:19-cv-03153 (S.D. Ind. October 21, 2020)

: 민권법 Title VII의 종교면책 조항은 오직 종교차별에만 허용되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주장을 가로막지 않는다

- 사회상규는 정당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

사회상규란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승인할 만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을 말한다(행정전문용어사전)

## 캐나다 Law Society of British Columbia v. Trinity Western University (2018)

다음으로 저울의 다른 한쪽을 살펴보면, 이 사건 로스쿨을 인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변호사업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및 법조계 내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변호사협회의 법규상의 목적을 크게 증진시킨다. 법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3년간 가장 사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에서조차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부정하도록 강요하는 로스쿨을 허용한다면, 이러한 변호사협회의 결정은 사법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적 공동체적 관습을 통해 신앙을 지키고 표현할 신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종교적 관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것은 형량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의무적 언약의 효과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한다. 변호사협회의 결정은 이 사건 로스쿨에 다니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한다. 이러한 개인들은 법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3년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부정해야 했을 것이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반대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강요받는 것은 모멸적이고 무례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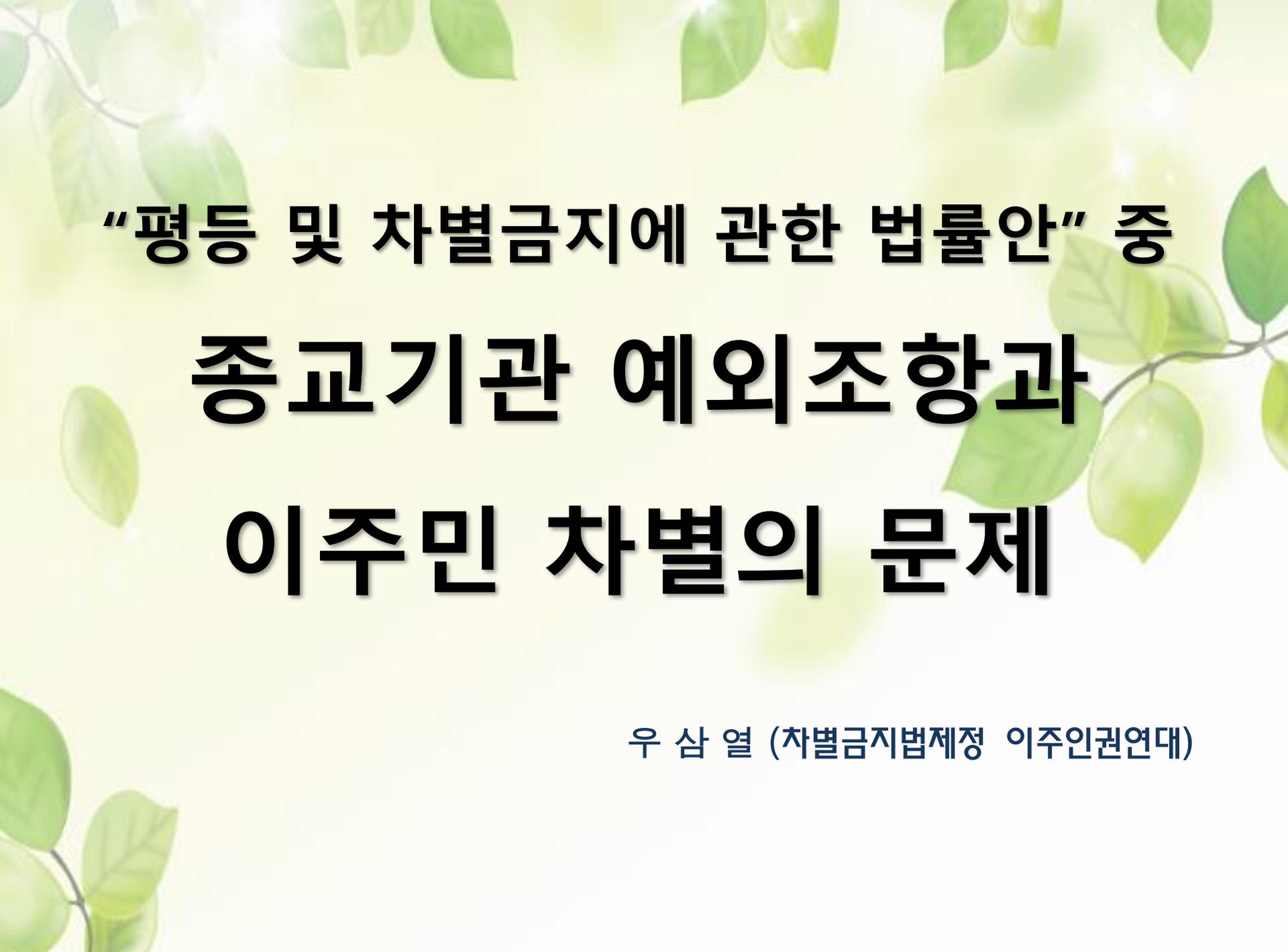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모두에게  
차별금지법

2007년 차별금지법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이래 성소수자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요구했다. 이는 단지 조문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어떠한 예외도 없는 온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것이었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중  
종교기관 예외조항과  
이주민 차별의 문제**

우 삼 열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인권연대)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 의견표명 내용

- 차별의 개념 :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차별의 영역 : 1. 고용 / 2.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 4.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 혐오표현의 제한 : 제3조(차별의 개념) 5.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 차별금지법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내용

(발의 : 2020년 6월 29일)

- 혐오표현의 제한 :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 종교에 기반한 이주민 혐오와 차별 사례



# 종교에 기반한 이주민 혐오와 차별 사례

## 동성애 · 이슬람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2012년에 제정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동성애·이슬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하기에 폐지되어야 합니다!

1. 충남인권조례의 인권의 정의(definition)는 동성애(성적지향)등을 옹호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인권 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제2조).
2. 충남인권조례가 구현하고자 하는 충남인권선언의 문제점

충남도인권선언 제1조(차별금지) ①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국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종교에 기반한 이주민 혐오와 차별 사례

(5) 제17조는 이슬람국가에서 온 이주민의 종교 문화의 구현을 도청이 책임진다고 선언하여 충남을 위험에 빠뜨리고 정교분리 위반이어서 반대합니다.

충남도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 ② 충청남도는 **이주민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

#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

## 제4조(차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4.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 인종차별에 대한 UN의 권고

## <인종차별 행위 금지 및 처벌>

- 대중매체, 인터넷, 사회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우월주의적 선동이나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적발하고,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8.)



# 해외의 인종차별 적발 및 기소 사례

## Football fan accused of branding Premier League players a 'monkey' and a 'chink' while watching match with wife

- Police picked William Blything out from photographs of crowd after 1-1 draw on October 21
- Blything denies using racist language

By AMY OLIVER

PUBLISHED: 14:35 GMT, 5 November 2012 | UPDATED: 16:55 GMT, 5 November 2012

[Share](#) [+1](#) [1](#) [Tweet](#) [14](#) [Like](#) [42](#)

A football fan has appeared in court accused of calling one Premier League player a 'monkey' and another a 'chink'.

William Blything, 41, is alleged to have hurled the insults at Korean Queen's Park Rangers captain Park Ji-Sung and Everton midfielder Victor Anichebe when he was at a match with his wife.

Police picked Blything, from Wavertree, Liverpool, out from photographs of the crowd at Loftus Road when a complaint was made after the 1-1 draw on October 21.

Merchant seaman Blything, who is an Everton supporter, told Hammersmith Magistrates' court he would fight the claims and defend himself.

'I'm not guilty to the racial bit, but I fully admit I used offensive language,' he said. 'I'm quite clear I didn't say that.'

Any one of 4,000 people could have said that, and I'm getting the blame. My wife heard me swear, but she knows I didn't say anything racial.'

Speaking in a West Country accent, Blything added witness statements referred to the abuser as yelling in a Liverpool accent.



© central news

Blything, 41, from Wavertree, Liverpool, denies using racist language at the 1-1 draw between Everton and QPR on October 21



NEWS  
채널 23 12  
12:25

# 프란치스코 교황, 다음 주 로힝야 난민 만난다

사 ▶ 검찰, '극정권 댓글' 용산경찰서장실 압수수색 ▶ 3대3 농구연 임/유코희 1287.55 ▲ 6.18

▶ ◀ 🔊 0:03 / 0:37

⌵ ⚙️ 📺 📱 🗉



**Pope Francis  
washed and  
kissed the  
feet of  
refugees**

▶ ⏪ 🔊 0:01 / 1:25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헌법소원 제기

- 2017년, 기독교계 학교인 서울디지털고 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함
- 각종 지자체 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사실상 전면 부정함

## 헌법소원의 주요 내용

-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유보의 원칙'(法律留保,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에 위배됨
-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이 준수할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학교장에 있음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사유는 초중등교육법 등과 달라 교육 관련 법령에 위배됨
-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선 고 일 2019. 11. 28.

주 문 (재판관 전원 일치)

1. 청구인 1 내지 14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7. 9. 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1 내지 14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인 15 내지 23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표현내용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 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혐오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발화 즉시 표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고취시킴으로써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차별·혐오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이는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되므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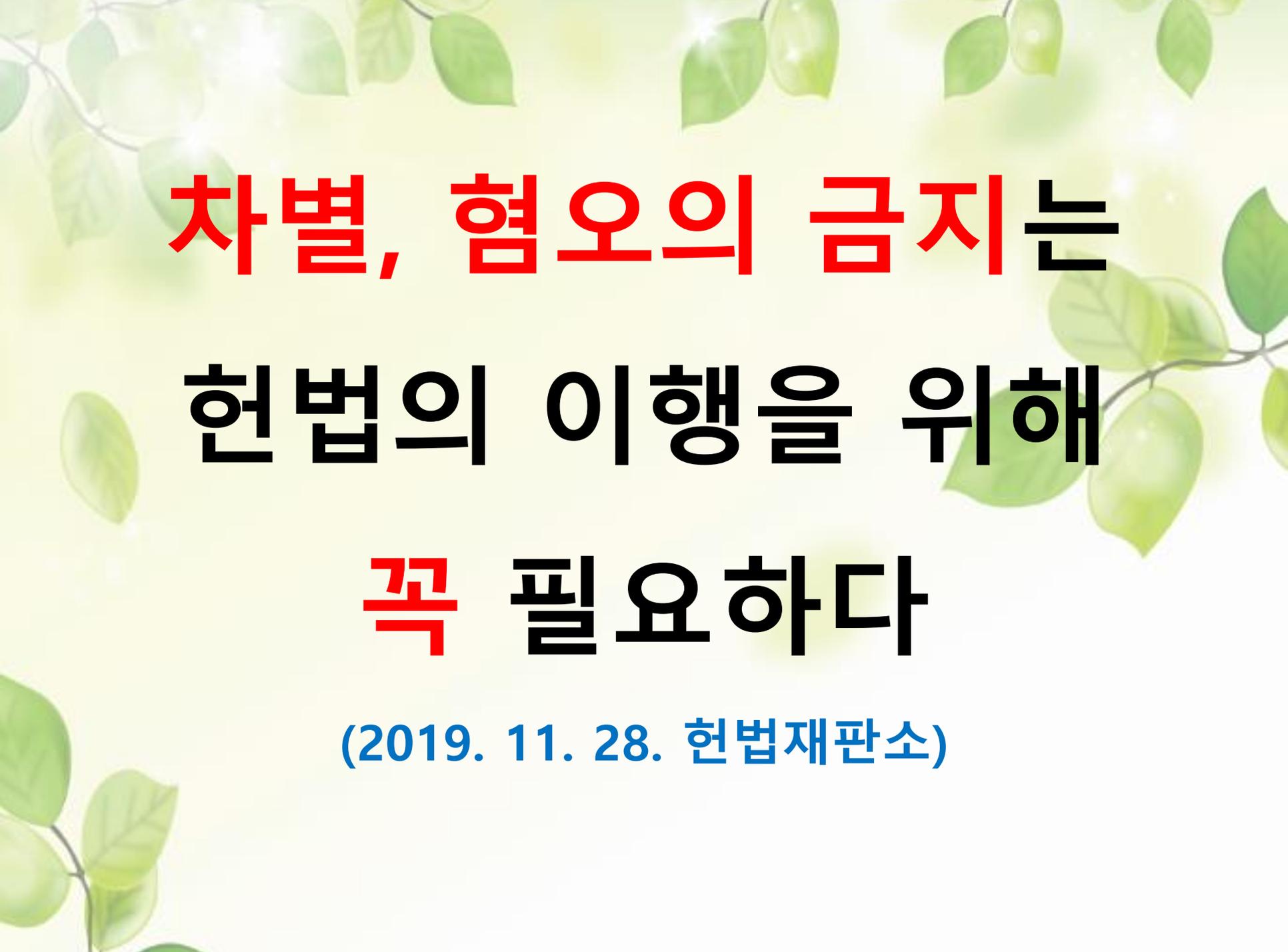
# “차별금지법안”의 과제

## 1. ‘차별금지법안’을 통해 UN의 권고 이행이 가능한가?

- 인종차별 행위로 기소 및 처벌 가능해야 함.
- 인종차별의 영역이 대중매체, 인터넷, 사회 네트워크(SNS)로 확대되어야 함.

## 2. 종교에 의한 인종차별과 혐오를 허용할 것인가?

- 무슬림의 발을 씻겨주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교황과 이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한국 개신교단체 중 누가 종교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판결에 맞겨야 하는가?
- ‘차별과 혐오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2019.11.28)은 무력화 되는 것인가?



**차별, 혐오의 금지는**

**헌법의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

(2019. 11. 28. 헌법재판소)

##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 - 성과 재생산 권리를 중심으로

• 류민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

### 1. 서론

-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는 배경: 2019년 형법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조치를 위해 2020년 10월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중 의료거부 조항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제정안의 종교기관 예외
- 문제의식: 두 시도 모두 다른 국가에서 어떠한 법적 사회적 결과와 해악이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또한 기존에 있었던 토론이나 숙의의 맥락이 전혀 없는 시도로서, 이 조항의 해악에 대해 입증책임이 기본권 수범자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기본권 주체에게 넘어오는 것으로 과정 자체로 문제적
- 오늘 토론에서는 알려진 조항의 해석보다는 이러한 종류의 조항들이 끼치는 해악에 대해 살펴보려 함. 의료 관련 법, 차별금지법제 중 특히 재화와 용역 영역에서의 이러한 예외가 특히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해 끼친 심각한 영향 중심으로 서술하려 함.

### 2. 용어 ‘종교기관 예외법 Religious Exemptions Laws’

- 좁은 범위로는 의료 관련 법에서 의료의 거부<sup>1)</sup> 뿐만 아니라, 일단 인정되는 차별행위지만 종교에 기반한 예외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제 조항 및 관련 법까지 포함
- 이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 Religious Freedom’ 혹은 ‘종교 자유의 회복’<sup>2)</sup> 라는 표현을 쓰지만 본질을 오도하고자 하는 잘못된 표현.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신의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소비자, 환자)에게 강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는 거리가 있다.
- 성과 재생산 권리(SRHR) 관련 구체적 예: 의사, 간호사, 약사가 자신의 종교나 윤리에 따라 임신중지 관련 의료, 보조생식기술, 불임수술, 사후피임약, 피임약, HIV 의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고용주가 자신의

---

1) 법제를 분류할 때 ‘양심에 기반한 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 표현을 쓰기도 하나 역시 차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군사 관련 ‘양심적 거부’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군사와 관련된 ‘양심적 거부’와 그의 직업에서의 ‘양심에 기반한 거부’는 맥락과 양상이 매우 다름.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 당하는 징집제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에 기반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과 공적 서비스나 정부로서의 의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대안적 제공자에게도 의뢰하지 않아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다르며, 국제인권법에서도 후자는 이를 권리로 보고 있지는 않음

2) 미국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of 1993)

종교나 윤리적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의료서비스(피임도구)를 직장 제공 건강보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임신중지에 윤리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의사가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임신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수 있는지, 혼전임신에 반대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비혼 임신여성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카톨릭 계열 병원에서 트랜스젠더 관련 케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등 (의사나 간호사가 자신의 종교나 윤리에 따라 말기의료에서의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혹은 수혈 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지). 특히 이러한 거부를 하는 제공자가 그 지역의 유일한 사람이나 병원인 경우 그 결과는?

### 3. 한국의 임신중지 관련 예외 주장: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중 의료거부 조항

제14조의3(인공임신중절 요청의 거부·수락) ① 의사는 「의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요청한 자에게 제7조의2제1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여 임신의 유지·중결에 관한 필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해당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요청의 수락 또는 제1항에 따른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내용: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수술의 경우 개인의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음을 새로 규정. 진료거부 시 연계의무가 있으나 의료기관이 아닌 임신 출산 긴급전화 및 종합상담기관으로만 안내하면 됨. 진료거부에는 생명 위험, 응급 상황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음
- 국제인권법상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의료접근성 저하를 우려하여 정책적으로도 권장하지 않음
- 유엔 자유권위원회, 생명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에서 “각 당사국은, 의료제공자에 의한 신념적 거부의 결과로 인하여 야기된 장벽을 포함해서,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부인하는 새로운 장벽을 도입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며 의료제공자의 거부행위가 여성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 보았음
-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법은 안전한 임신중절과 산후 조리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특히 빈곤, 난민, 시골 여성들에게 어려움을 끼친다. 다른 성·재생산 보건의료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제한적 체계는 임신중지가 개인에 따라 주관적인 관행이라는 낙인을 더욱 강화한다”
- 관련 입법례가 있는 곳은 임신중지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통념과 보복의 두려움으로 의사들이 사실상의 거부를 만연히 하는 곳으로, 이런 국가들의 입법 취지는 진료거부 시 의무를 부과하고 합법적 거부의 범위를 좁혀 임신중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 입법례가 있는 곳은, 1) 다른 임신중절 제공자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연계 의무를 부여하며 2) 긴급하거나 응급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3) 개인이 아닌 병원, 기관 차원에서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4) 여성의 결정을 포기하도록 거짓 정보를 줄 수 없게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보건당국이 감독하고 규제. 또한 공공 및 민간 의료 모두에서 임신중절수술 의료제공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하게 지리적으로 분산되었는지 확인
-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낙인화를 강화할 수 있어 유엔에서는 도입 자체를 권장하지 않음
- 가장 나쁜 예: 이탈리아는 산부인과 의사 70%, 마취과 의사 51%, 비의료인 직원 44%이 임신중절 진료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 이탈리아 중 보수적인 8개 주는 거부 의사가 80-90%에 달함. 이탈리아 여성은 다른 지역이나 유럽 다른 나라로 가서 임신중지를 하는 경우가 흔함. 많은 통계에서 이탈리아는 사실상 임신중단이 어려운 나라로 분류. ‘원칙보다 더 큰 예외’

- 임신중단 관련 의료 지체 및 거부: 이탈리아, 폴란드, 스코틀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 더욱 확장되어 사후피임약 관련 약사의 거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엘 살바도르, 온두라스, 페루 등
- 관련 판례: 유럽인권재판소 R.R. v. Poland 사건. 폴란드에서 한 여성이 유전자 기형 검사를 거부받음. 타 지역까지 여러 병원을 전전했으나 계속 거부받음. 이미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어려운 상황. 터너 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출산함. 유럽인권협약 제 8 조 사생활의 자유, 제 3 조 비인간적/부당한 처우금지 위반으로 인정. 재생산권리에서 최초로 제 3 조를 사용. 유럽인권재판소 P. and S. v. Poland 사건. 14 세 소녀 P 와 모친 S 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중지 거부한 사건. 범죄로 인한 임신의 경우 임신중지는 합법. 15세 이하 의제강간 조항으로 임신중지 가능했던 사건. 하지만 의사들이 모두 거부. 카톨릭 신부가 알게 되어 국가적 논쟁으로 번짐. 모친 S 는 임신중지를 종용하는 학대자로 오해받아 S 는 청소년 쉼터로 분리됨. 결국 다른 도시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음. 이 모녀에 대해 폴란드가 협약 제 3 조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위 두 사건 다 법적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의무 부여. 유럽인권재판소 Grimmark v. Sweden 사건. 임신중지시술 거부한 조산사 사건. 재판부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 상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보호되지만 제9조 제2항의 제한에서 보듯 신념을 공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행위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하며 “스웨덴은 전국적으로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전문적인 맥락에서 보건 의료 전문가가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건의료체계를 조직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모든 조산사가 그 직무에 필요한 의무를 다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균형적이고 정당화된다.”고 함

#### 4. 최근 이러한 ‘예외’가 자주 주장되는 미국 상황

- 연방법 상 종교 예외: 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964) 제정 당시 입법 반대자 (남부 인종차별주의자) 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자연법’이 인종 분리를 정당화한다고 하며 공청회에서 종교적 조직에 대한 전면적 예외(blanket exemptions)를 주장. 전면적 예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종교적 고용주에 대해서만 노동자의 종교 차별 면책 조항 입법됨(제7장).<sup>3)</sup> 하지만 예외가 넓고 해석도 광범위함

##### 3) APPLICABILITY TO FOREIGN AND RELIGIOUS EMPLOYMENT

SEC. 2000e-1. [Section 702]

(a) Inapplicability of subchapter to certain aliens and employees of religious entities

This subchapter shall not apply to an employer with respect to the employment of aliens outside any State, or to a religious corporation, association, educational institution, or society with respect to the employment of individuals of a particular religion to perform work connected with the carrying on by such corporation, association, educational institution, or society of its activities.

SEC. 2000e-2. [Section 703]

(e) Businesses or enterprises with personnel qualified on basis of religion, sex, or national origin;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personnel of particular religion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subchapter, (1) it shall not be an unlawful employment practice for an employer to hire and employ employees, for an employment agency to classify, or refer for employment any individual, for a labor organization to classify its membership or to classify or refer for employment any individual, or for an employer, labor organization, or joint labor-management committee controlling apprenticeship or other training or retraining programs to admit or employ any individual in any such program, on the basis of his religion, sex, or national origin in those certain instances where religion, sex, or national origin is a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reasonably necessary to the normal operation of that particular business or enterprise,

- 민권법의 문제: 해석의 광범위함. 예를 들면 ‘종교적 기관’에 세속적 비영리 단체도 포함함. Corporation of the Presiding Bishop v. Amos (1986):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가 운영하는 비영리 체육관 사건. 직원의 종교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해석이 수정헌법 제1조 종교자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함. 종교의 목적은 당연히 종교의 확장이고, 여기서는 국가가 종교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장로회가 운영하는 시니어 홈 EEOC v. Presbyterian Ministries, Inc., 788 F. Supp. 1154 (W.D. Wash. 1992), 과학자, 그리스도 제일교회가 운영하는 신문 Feldstein v. Christian Science Monitor, 555 F. Supp. 974 (D. Mass. 1983), 기독교 계열 초등학교, 대학교 Ganz v. Allen Christian School, 995 F. Supp. 340 (E.D.N.Y. 1998), Killinger v. Samford University, 917 F. Supp. 773 (N.D. Ala. 1996),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비영리의료센터 Young v. Shawnee Mission Medical Center, 1988 U.S. Dist. LEXIS 12248 (D. Kan. Oct. 21, 1988)를 종교기관으로 포함시킴
- 민권법 예외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약화 시도 많음. 예를 들면 연방대법원 Burwell v. Hobby Lobby (2014) 판결은 성소수자와 재생산건강 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최근 판례. 이 판결 이후 인권단체들은 종교 면책 관련한 어떠한 새로운 입법이나 확장에도 반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기업 Hobby Lobby는 50명 이상의 종업원이 일하는 기업들에게 경구 피임약(morning after pill), 피임 기구(diaphragm), 자궁내 피임기구(IUD)를 포함하는 피임 서비스의 보험 커버를 요구하는 건강보험개혁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연방대법원은 Hobby Lobby 손을 들어주며 종교자유조항이 (유사) 기업에도 확장됨. 주 차별금지법과 공공편의시설 관련 종교 예외 판례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sup>4)</sup> 주별로 차별금지법 약화 입법 시도도 계속 등장.<sup>5)</sup>
- 임신중지 및 의료 서비스 관련 거부 규정: 1973년 Roe v. Wade 이후 개별 주에서 물리적, 재정적, 시설적, 인적 제약을 만들어 임신중지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법률적 시도 등장. 특히 임신중지서비스 대상 규정 (TRAP; Targeted Regulation of Abortion Providers) 법률 등장. 동시에 의료법에 있는 거부 규정도 넓게 해석하며 의료 관련 접근성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2015년 임신중지 접근을 위한 여성의 이동거리 17km에서 36km. 주마다 상이함. 이는 2000년도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었음.<sup>6)</sup>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미국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ACOG Committee Opinion, 재생산의료에서 양심적 거부의 한계들(The Limits of Conscientious Refusal in Reproductive Medicine), No.385, 2007 권고안<sup>7)</sup> 채택

---

and (2) it shall not be an unlawful employment practice for a school, college, university,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or institution of learning to hire and employ employees of a particular religion if such school, college, university,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or institution of learning is, in whole or in substantial part, owned, supported, controlled, or managed by a particular religion or by a particular religious corporation, association, or society, or if the curriculum of such school, college, university,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or institution of learning is directed toward the propagation of a particular religion.

- 4)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2018): 2012년 종교적 이유로 동성커플에게 웨딩케익을 판매하지 않은 마스터피스 케익샵의 소유주에게 콜로라도 인권위가 시정 명령 내림. 연방대법원은 주가 시정 명령 판단했을 때 종교중립성을 위반하여 종교에 적대성을 보였으므로 (원고의 입장을 노예제나 홀로코스트 옹호에 비유한 사실) 종교자유 조항 위반이라 보았음. 차별금지법과 종교 예외 일반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은 좁은 범위의 판결. Fulton v. City of Philadelphia 현재 심리 중: 동성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은 카톨릭 계열 입양기관. (필라델피아 시와 수탁계약을 맺음)
- 5) 자세한 내용은 휴먼라이츠워치보고서 <https://www.hrw.org/report/2018/02/19/all-we-want-equality/religious-exemptions-and-discrimination-against-lgbt-people>
- 6) Bearak, J. M., Burke, K. L., & Jones, R. K. (2017). Disparities and change over time in distance women would need to travel to have an abortion in the USA: a spatial analysis. The Lancet Public Health, 2(11), e493-e500.
- 7) 양심에 대한 존중은 재생산 의료의 윤리적 실천에 중요한 많은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감안할 때, ACOG 윤리위원회는 다음 권장 사항을 제안합니다. 이 권고안은 그들이 진료하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강관리 전문가의 양심에 대한 존중을 극대화한다고 믿습니다. 재생산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자의 복지가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환자의 복지와 상충되는 양심적 거부는 환자에 대한 일차

## 5. 나가며: 원칙보다 유명한 예외를 만들 수 없다

- 위에서 본 해악들의 함의는, 이러한 입법은 때로는 예외를 ‘좁히고자’ 하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의도한?) 법적 혼돈 상태를 열게 된다는 것
  - 해석의 범위를 묻거나 테스트해보는 소송이 많아짐
  - 비슷하게 보이는 표현의 조항이라도 그 법관들의 선례, 해석과 합쳐져서 다른 법적 결과를 낳기도 함
  - ‘좁다’고 생각했던 예외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게 됨
  - 다른 법에 유사조항을 넣는 것이 쉬워짐
-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있어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아닌 종교예외 규정한 평등법만으로도 한국에서의 권리 보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이 조항의 도입에 반대한다

---

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용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제공자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인정된 묘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양심이 임신중지, 불임 및 피임약 제공을 포함하여 표준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의사를 요구하는 경우, 잠재적 환자에게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대한 정확한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사는 전문적인 권위를 사용하여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 및 기타 건강관리전문가는 양심적으로 환자가 요청하는 표준재생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 다른 의료제공자에게 적시에 환자를 연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 의뢰가 불가능하거나 환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제공자는 제공자의 개인적인 도덕적 반대에 상관없이 의학적으로 지시되고 요청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재생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접근을 저해하는 양심적 거부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덕적 또는 종교적 이의가 있는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환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개인과 근접한 자세로 진료를 받거나 연계의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을 돌보는 것을 철회할 권리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는 재생산 서비스를 찾는 모든 여성에게 적시에 효과적이고 증거에 근거하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목표와 공급자의 양심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

•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쓰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및 연대 단체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소위 '평등법안'의 종교기관 예외조항 추가에 대해 발제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굳이 종교기관 예외 조항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선·포교의 자유는 보장되니,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종교)단체 또는 그 종교단체에 소속된 기관'의 범주가 불분명하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공적 기관 등에서 종교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앞으로 종교기관 예외조항이 추가된 '평등법안'이 제정된다면 다른 법률에도 예외 조항이 추가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 ○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 앞에서 멈춰야 한다.

내면의 신앙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을 절대적 자유이지만, 그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자연이 진행한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공익소송 대법원 판결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선·포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며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정작 자신들과 다르거나 타종교인들의 신앙표현에는 적대감을 드러낸 적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다.

사찰 방화, 사찰 땅밟기, 강제개종, 이단 낙인찍기, 전통문화에 대한 터부, 이슬람 반대, 성소수자 사역 목사 징계, 사찰 방화 사과 및 성금 모금 교수 해고 등등.

### ○ 종교단체가 운영하더라도 공적 기관들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은 공적 기관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의 의무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많은 공적 기관들을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교육과 사회 복지 분야이다. 이외에도 종교단체에 국고가 지원되는 분야는 많다. 문광부 종무실을 위주로 한 종교문화 분야, 해외원조(ODA)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종교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들은 사회적 지원과 견제를 위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지원되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런 관리, 감독의 부실은 종교단체가 공적 기관의 부적절하고 위법한 운영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면책조항까지 준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들은 종교단체의 교세 확장을 위한 선교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법과 제도가 마련된 분야도 이렇진대 종교분야는 사회적 견제를 위한 법령 자체가 없다. 종교계의 부패를 해소할 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운동이 전개된 이유이기도 하다.

### ○ 종교인 과세법이라고 불리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개악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세분야의 종교 예외 조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나 종교인의 근로소득세의 과세는 그동안 위법하게 받아들여 특혜 관행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다.

국민의 여론 또한 뒤집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법을 무력화 시키는 방향으로 대응방식을 바꾸었다.

해당 정부부처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법령의 개악과 개신교인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까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종교인 과세법 누더기화에 주력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퇴직소득세까지 줄이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중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보수 개신교계는 종교인 과세법 과정에서 얻은 학습효과를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국면에서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면책조항을 추가하여 법안의 입법 취지를 흔드는 방식은 종교인 과세법의 개악 과정에서 드러난 종교 예외 주장과 같은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 ○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밀실 야합을 더 이상 방조해서는 안 된다.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며 민주적 선거제도가 시작되고, 지방선거가 제도화되면서,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은 선거에서의 표를 바탕으로 더욱 밀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교계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인을 당선시키고, 그 정치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소속한 종교단체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180여석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부여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 건너 볼 보듯 하는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임하자

분명, 우리는 시대정신이나 명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180여석의 거대여당은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보다는 표가 되는 종교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훨씬 더 치우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종교권력의 눈치를 보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평등법’의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온전한 ‘평등법’의 제정에 사적인 정치 계산으로 막아서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보수개신교계에도 당부 드린다. 이런 특혜의 성을 쌓을수록, 스스로를 가두고 국민들로 하여금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지기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